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고 제2026 - 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소속의원 명부 등의 제출기한을 규정하여 원구성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 소속의원 명부 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참조 : 의회사무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 전화 : 02)3425-7388, FAX : 02)3425-7292, E-mail : tnk10@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